



# 서울교육대학교 · 공군사관학교 학술교류 합의서



**제1조(목적)** 이 합의서는 서울교육대학교와 공군사관학교(이하 “양교”라 한다) 사이에 교육·연구·정보·학술 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교의 발전과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교류 · 협력 분야)** 양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상호교류·협력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1. 교육 및 연구 인력의 상호 교류
2. 생도 · 학생의 교류
3. 공동 강좌·연구·교육프로그램의 개발
4. 학술자료, 출판물, 도서관 자료 등을 포함한 학술 정보의 교환
5. 세미나, 학술회의, 심포지엄 등의 공동 개최
6. 비행교육 시설 및 장비를 제외한 일반교육 시설 및 장비의 상호 사용
7. 행정, 경영, 관리 등 학문연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 협력
8. 기타 상호발전과 협력에 필요한 사항

**제3조(시행방법)**

- ① 양교는 군사기밀보호법, 동 시행령 및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 등 군사보안업무에 관한 제반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을 추진한다.
- ② 교수 및 생도 · 학생의 교류에 관한 사항은 양교의 학칙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추진한다.
- ③ 이 합의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상호 협의에 의해 따로 정한다.

**제4조(재 원)** 양교는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며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한다.

**제5조(공동실무위원회)** 양교는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양교의 장이 별도로 합의하여 공동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**제6조(해지권의 유보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방은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이 합의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.

1.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 합의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2. 전쟁, 사변, 기타 중대한 작전상의 이유로 인하여 이 합의서를 유지함이 국방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

**제7조(책임)**

- ① 양교는 이 합의서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다.
- ② 양교는 이 합의서의 시행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 등 제3자에게 알려져서는 아니되는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누설하지 아니할 책임이 있다. 이는 이 합의서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동일하다.

**제8조(효력 발생일 등)**

- ① 이 합의서는 양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- ② 이 합의서의 협약기간은 체결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,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된다.

**제9조(정기적 재검토 및 수정)** 본 합의서는 양교의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수정, 변경 또는 폐기할 수 있다.

**제10조(보관)** 본 합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교에 각 1부씩 보관한다.

**제11조(연락처)** 본 합의서에 대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.

1.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발전기획단  
(주소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 
(전화) 02-3475-2226
2. 공군사관학교 교무처  
(주소) 충북 청원군 남일면 단재로 635 사서함 335-1호  
(전화) 043-290-6224

2013년 1월 22일

서울교육대학교  
총장 신항균

신항균

공군사관학교  
학교장 김영민

김영민